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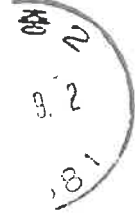
내 용 증 명

수신인

회 사 명 : (주)씨타대헌건설 대표이사님

주 소 :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257 대영골든벨리 1101호 비호

(참조인: 이봉안 전무님)



발신인

성 명 : 서 봉 석(주식회사 공주유황스파타운 대표자 자격포함)

주 소 : 공주시 우금티로 580, 108동 603호(금학동, 금학이편한세상아파트)

귀사와 체결한 유구유황은천개발관련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8. 26일 귀사는 공주시에 제출한 산지복구비에치증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공주시측에 발송하기로 하고 또한 당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지를 전화로 통보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측에서는 수차례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귀사가 거절을 하여 부득이 귀사측에 1개월 유예까지도 요청하였지만 귀사는 귀사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미 결정이 난 상태로 번복을 할 수 없고 8월26일 당일 공주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고 당사와의 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2022년8월27일 SNS로 귀사의 입장이 불변이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 제3의 건설회사를 물색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5. 당사는 귀사의 통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귀사와의 계약해지의사를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사에 알리고 본 내용증명을 계약해지 통보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3의 건설회사를 물색 후 계약체결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우편물은 2022-09-02
제 341040205302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부천중2동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2022년 9월 일



발신인 : 서 봉 석



주식회사 씨타대헌건설

우편16074 /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257 (고천동) 대영골든벨리 1101호 TEL 031)459-0441~3 FAX 031)454-8764



문서번호 : 대헌 제 2022 -135호

발송일자 : 2022. 11. 22.

수 신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봉황동) 공주시청

참 조 : 산림공원과장

선 결			지 시		
접 수	일 자		결재		
	시 간				
수 번 호					
처리부(과)			공람		
담당자					

제 목 : (주)공주유황스파타운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민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의 제2022-89호 민원에 따른 내용 연장으로 토지주 & (주)공주유황스파타운 (대표자 자격포함) 서봉석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당초 시공사인 (주)씨타대헌건설과 2022년 09월 02일자로 도급 계약 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을 통해 받았습니다.

3. 2022년 09월 02일 당사와 도급계약 해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변경 시공사 미선정된 상태임으로 온천개발 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해당될것으로 이에 (주)공주유황스파타운 온천개발 계획 승인을 즉시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주)공주유황스파타운 서봉석 내용증명 사본 1부. -끝-

이 우편물은 2022-11-22
제 341450202165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의함우체국장



(주)씨타대헌건설 대표이사 이봉대 (인)



내 용 증 명

수신인

회 사 명 : ㈜씨타대한건설 대표이사님

주 소 : 경기 의왕시 경수대로 257 대영골드밸리 1101호 비호

(참조인: 이봉안 전무님)



발신인

성 명 : 서 봉 석(주식회사 공주유황스파타운 대표자 자격포함)

주 소 : 공주시 우금티로 580,108동 603호(금학동, 금학이편한세상아파트)

귀사와 체결한 유구유황온천개발관련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 8. 26일 귀사는 공주시에 제출한 산지복구비예치증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공주시측에 발송하기로 하고 또한 당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해지를 전화로 통보해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이에 발신인측에서는 수차례 협조요청을 하였으나 귀사가 거절을 하여 부득이 귀사측에 1개월 유예까지도 요청하였지만 귀사는 귀사측의 내부사정으로 인해 이미 결정이 난 상태로 번복을 할 수 없고 8월26일 당일 공주시에 내용증명을 발송한다고 하고 당사와의 계약해지 의사를 분명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이에 당사는 2022년8월27일 SNS로 귀사의 입장이 불변이니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부득이 제3의 건설회사를 물색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5. 당사는 귀사의 통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귀사와의 계약해지의사를 본 내용증명을 통해 귀사에 알리고 본 내용증명을 계약해지 통보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3의 건설회사를 물색 후 계약체결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우편물은 2022-09-02
제 8410402053028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부천중2동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2022년 9월 일



발신인 : 서 봉 석